

2020 년 09 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

- 직인생략 -

사업장기본사항

사업장관리번호	920-23-92704-1	사업장명칭	강서수도사업소(저수조 운영 현황조사 노동자)
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연금보험료 결정내역

※ 추가 정산할 과오납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최종 납부대상 금액이 (-)입니다.

당월분 (+)	인원 수	보험료	전자고지 감액분(-)	200 원
	1 명	153,000 원	연금보험료 지원금(-)	전 월 분 이월분(전월이전)
소급분 (+)	인원 수	보험료	계 (당월 결정 금액) (A)	
	0 명	0 원	152,800 원	
	소급분할납부 차수(인원 수)	소급분 분할납부종인 보험료	이미 납부된 금액 (B)	
	미해당(0 명)	0 원	최종 납부대상 금액(A-B)	
			0 원	
			152,800 원	

- * 이 결정내역서는 매월 자격변동 신고 마감일(15일)까지 사업장에서 신고한 자격변동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* 당월분보다 소급분이 많은 경우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(제외 : 건설현장 사업장, 납기전 고지 사업장).
○ 신청기한 : 납부기한일까지(자동이체 사업장은 출금일 3일전까지),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웹EDI, 전화(유선신청 가능)
- * 당월에 자격변동 소급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과오납금(이자 포함)이 총당되어 있는 경우에는 '이미 납부된 금액'으로 표기됩니다.
- * 연금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월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다음 달 연금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월분 국고지원예정 내역은 표기되지 않으며, 공제 후에도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로 이월하여 '이월분 지원금'으로서 공제해드립니다.
(예 : 7월분 공제예정금액 10,000원 - 8월분 연금보험료 7,000원 = 공제잔액 3,000원 → 9월분 연금보험료에서 공제)
- *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기준 등
 - 사업장(공통) :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
 - 근로자 :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5만원 미만 근로자 (2020년 기준)
 - 지원금액 : 지원대상자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90(80)%(신규가입자), 30%(기존가입자) 지원(2020년 1월부터 적용)
*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(그 외는 기존가입자)
- * 지면 관계상 가입자별 상세 내역은 당월분 50명, 소급증가분 30명, 연금보험료 지원 20명까지만 표출되므로, 전체 세부내역이 필요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청(☎ 국번없이 1355(유료)) 하시고,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EDI(<https://edi.nps.or.kr>)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입자별 결정내역, 소급분 상세내역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(☎ 063-713-6565)

2020 년 09 월